

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303) 일부개정(안)

1. 개정 이유

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 설치 피난구유도등의 화살표 병기 사항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출입구 상부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 경우 피난구 위치를 안내하는 화살표를 병기하도록 기준을 정함(안 2.2.4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